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홍남기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적용받은 소득세·법인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3. 23. ~ 2020. 3. 30.) 결과, 특기할

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항제1호 중 “제104조의8제1항·제3항”을 “제99조의11, 제104조의8제1항·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비과세) ① ~ ⑤ (생 략)	제4조(비과세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법 제4조제12호에서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 면을 말한다.	⑥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, 제10조의2, 제12조, 제12조의 2, 제13조, 제14조, 제18조, 제1 8조의2, 제18조의3, 제19조제2 항, 제25조제1항제1호, 제29조 의6, 제30조, 제30조의3, 제33 조, 제63조, 제63조의2, 제64 조, 제76조제1항, 제95조의2, 제98조의3, 제98조의5, 제99조 의9, <u>제104조의8제1항·제3항</u> , 제104조의21, 제104조의24, 제 104조의28, 제118조의2, 제121 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, 제121조의13, 제126조의2, 제1 26조의6 및 제126조의7제9항 에 따른 감면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제99조의11, 제104조의8제 1항·제3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의2. ~ 6. (생 략)	1의2. ~ 6. (현행과 같음)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133